종 법(宗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 종헌 제97조에 의하여 종단 각급 종회위원의 선거관리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 1. 선거관리위원회는 종단 각급 종회위원의 선거관리와 의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확정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부원장 중앙종회의장 포교원장 교육원장 사서실장 기획실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 선거입후보자는 제외된다.

제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